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r>방송통신위원회 | <b>보 도 자 료</b>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r>금융위원회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<br>도         | 2018. 12. 19.(수) 조간 | 배<br>포 | 2018년 12월 18일(화)<br>12:0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책<br>임<br>자 |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<br>천 지 현(02-2110-1540) | 담<br>당<br>자 | 최 진 경 사무관<br>(02-2110-1543) |
|             |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<br>주 흥 민(02-2100-2970)     |             | 유 원 규 사무관<br>(02-2100-2974) |
|             |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<br>이 명 규(02-3145-8521)  |             | 김 흥 선임조사역<br>(02-3145-8155) |
|             |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 총경<br>유 재 성(02-3150-0251)  |             | 이 성 일 경정<br>(02-3150-1559)  |

**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주의 당부**  
**- 5,300만명 대상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-**

-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이효성), 금융위원회(위원장 최종구), 금융감독원(원장 윤석현), 경찰청(청장 민갑룡)은 올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\*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하여 18일부터 「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」를 발송한다.

\* 메신저피싱(messenger phishing): 카카오톡, 네이버문,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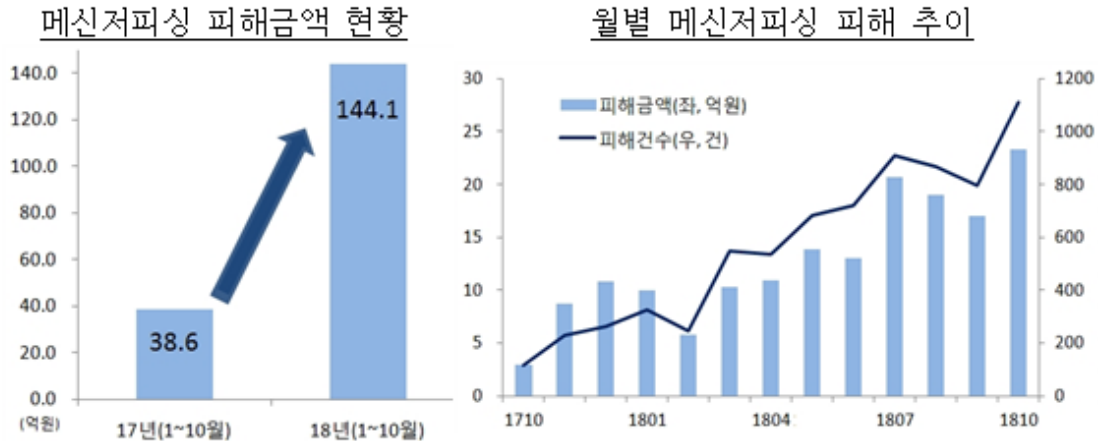
— < 메시지 내용 > —

친구, 가족 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!  
 금전요구 메시지 받으면 직접 전화해 확인!

※ 이동통신 3사는 12.18.(화)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,  
 알뜰통신사업자는 11월분 요금고지서(우편·이메일)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 안내

- 최근 온라인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**메신저 피싱 피해금액**이 **144.1억원**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**273.5%** 증가\* 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.

\* 메신저피싱 피해 현황 : ('17.1~10월) 38.6억원(915건) → ('18.1~10월) 144.1억원(6,764건)



\* 출처 : 금융감독원

- 메신저피싱은 **지인의 이름·프로필사진**을 도용해 접근하여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**통화를 회피**하는 한편, 긴급한 사유를 대며 3백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.
- 특히, 자녀, 조카 등을 사칭하여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**50~60대를 겨냥한 범죄**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

□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,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**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**하여야 한다.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**본인 확인을 회피**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**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** 한다.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**지체없이 112(경찰청)**, 해당 금융회사로 **지급정지**를 신청해서 인출을 막아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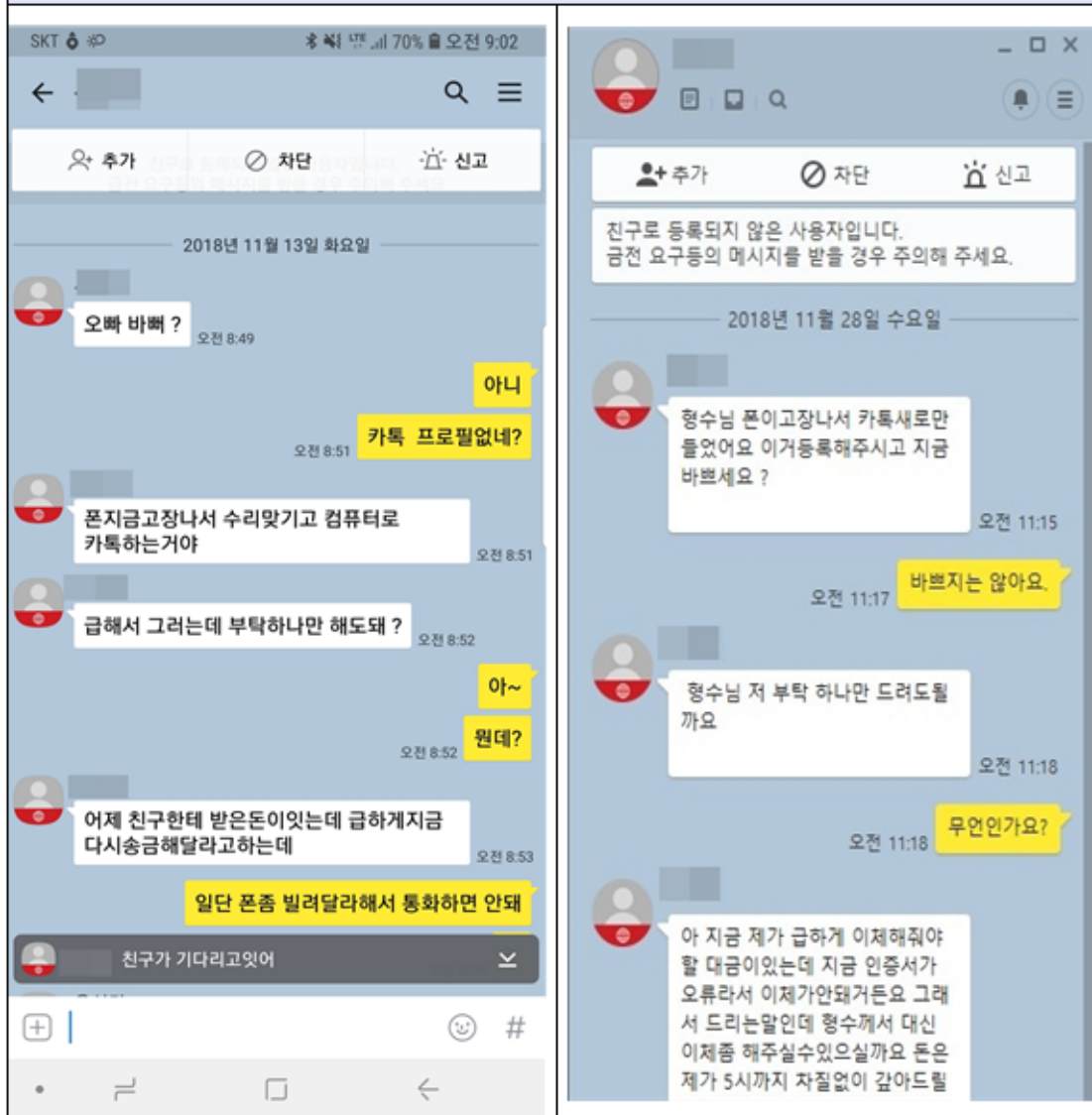
- 또한, 평소 메신저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,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여야 한다.

※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(와이즈유저, [www.wiseuser.go.kr](http://www.wiseuser.go.kr)), 보호나라([www.boho.or.kr](http://www.boho.or.kr)) 및 보이스피싱 지킴이([phishing-keeper.fss.or.kr](http://phishing-keeper.fss.or.kr)) 홈페이지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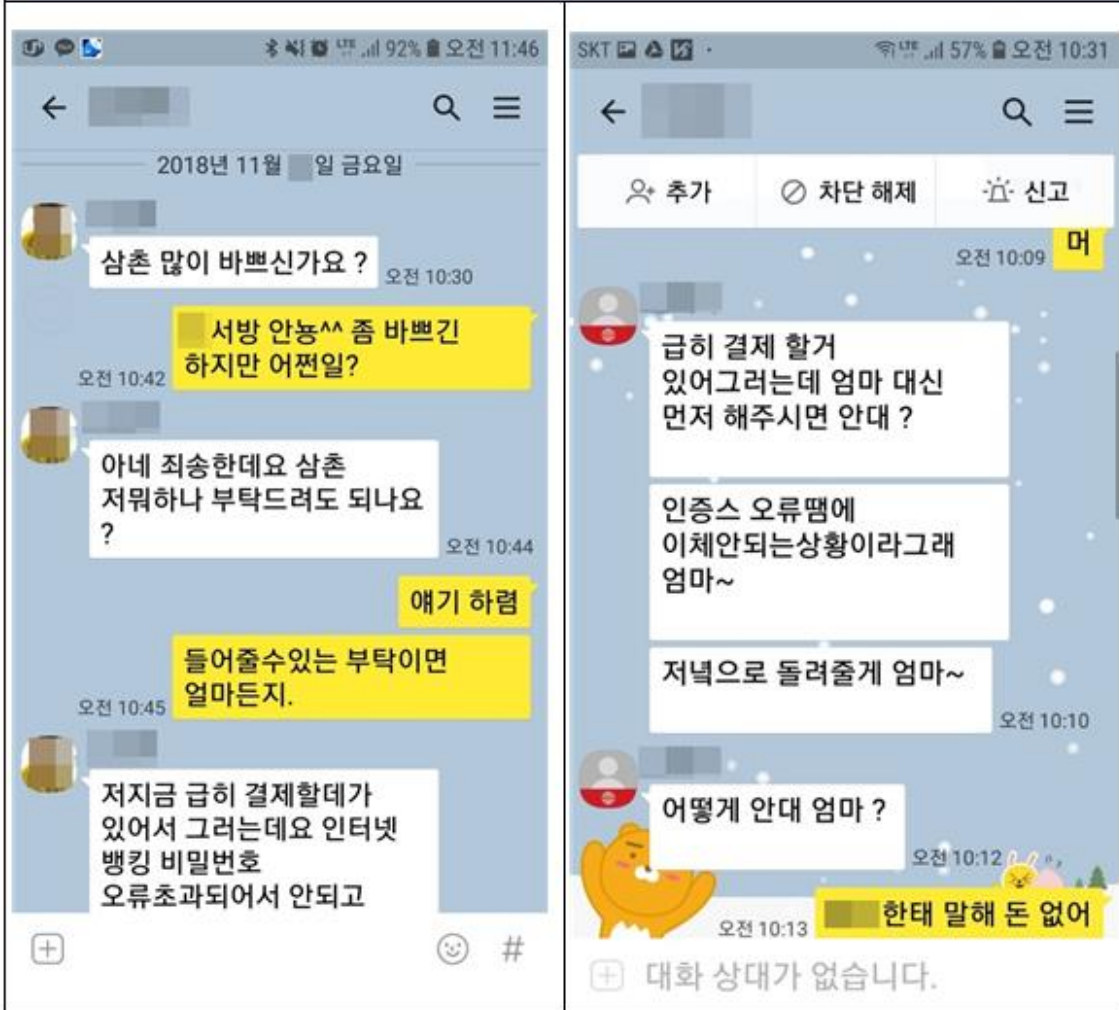
- 방통위, 금융위, 금감원, 경찰청 관계자는 “메신저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, 일상생활 속에서 **누구나 당할 수 있다**는 점을 명심하고,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**확인하는 습관**이다”라고 하며 “연말연시에는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(보이스피싱)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붙임 : 메신저피싱 주요 사례. 끝.

[사례 1] 프로필 변경에 대해 휴대폰 고장을 핑계로 대고 통화 회피



[사례 2] 부모, 이모, 삼촌 등 호칭을 특정하기 쉬운 사람에게 접근



[사례 3] 인증서 오류 등에 따른 송금불가를 핑계로 하여 주로 소액을 타인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

